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7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조승환 · 이종욱 · 이성권
서지영 · 김은혜 · 안철수
배준영 · 김태호 · 김승수
유영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제4호의2”를 “제3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을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의3은”으로,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를 “적용하고,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 ,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u>제4호의2</u> ,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u>제8호</u>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u> , <u>제8호의3은</u>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① ----- ----- ----- ----- <u>제1호, 제2호</u> ----- ----- ----- <u>제3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u> ----- <u>적용하고, 제8호</u> ----- ----- ----- <u>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의3은</u> ----- ----- ----- <u>적용하고,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u>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